탄 원 서

수 신	대법원 해당 형사재판부 귀중
피고인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원심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2026. 10. 28. 선고)
상고심 사건번호	대법원 (배당 후 사건번호 기재): _____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저는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상고심을 앞두고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한때 국가의 경호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황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을 수행한 사람이면 자신의 결정과 지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한 사람의 책임과 변화의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일부 사정을 참작받아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법원이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이 줄었다는 이유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의 범위와 개인의 처지를 구분해 살피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하며 상고심에서도 적법한 법률상 쟁점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1. 법률심의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마지막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이처럼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단순한 형량의 과중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심이 다시 판단하는 데에는 법률상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계를 무시하고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형의 무게를 정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제출되는 상고이유서의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위반이 존재한다고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적법하게 주장되었다면, 그 쟁점이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84조가 정한 심판의 범위도 존중하며, 탄원서가 본래의 상고이유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 상급자의 지시와 피고인 자신의 선택을 함께 구분해 주십시오

항소심에 관한 보도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영장 집행 저지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경호처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조성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현장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지시의 이행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불리한 평가를 숨기거나 축소하여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동시에 항소심은 이 전 본부장의 일부 행위가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른 측면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정은 그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정의 시작과 전달, 실행의 과정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해합니다.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이 동시에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두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법률적 판단에 관한 적법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어느 결정이 상급자에게서 비롯되었고 피고인이 어느 단계에서 독자적 판단을 하였는지, 어떤 행위를 직접 요구하였으며 그 행위가 법률상 어떻게 평가되는지 구별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반드시 낳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역할에 맞는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공정함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부하 직원에게 요구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봐 주십시오

공개된 제1심 보도에는 차량과 철조망 설치, 경호 인력의 대오 형성, 무장을 동반한 대응 등 영장 집행 저지 준비 과정에 관한 혐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전 본부장에게 인정된 구체적인 행위와 관여 정도는 판결문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보도만을 보고 각 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직접 지시였다고 단정하지도, 반대로 전부 다른 사람의 지시였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는 단순히 지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 법률적 판단입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권한의 남용, 의무 없는 일 등의 결과 및 그 연결관계가 문제 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 사이에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지에 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기된 경우 이를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지휘나 현장 대응이 경호업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지시를 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피고인이 자기 직위에서 실제로 한 일과 다른 지휘부의 결정이 법률상 정확하게 구별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4. 이미 확정된 관련 대법원 판단도 존중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 선고한 2026도6500 판결을 통하여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과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원서는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경호조직의 판단이 사법절차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 일반적인 법률상 원칙이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에 따라 각 사람의 직무상 권한, 실제 행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남습니다. 확정된 법리와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새로 만들지 않되, 이 전 본부장의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제기된 법률상 문제만큼은 소송기록을 기초로 충분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관련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피고인의 개별 책임을 정확히 묻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5. 항소심에서 나타난 책임 인정과 반성의 의미

항소심은 이 전 본부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제가 피고인의 실제 반성문과 진술 전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그 마음의 깊이를 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판부가 기록에 따라 판단한 범위 안에서 그 의미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정이 이미 항소심에서 고려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정을 다시 적는 것만으로 상고심의 파기사유가 생긴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인정되어 사건이 환송되는 등 다시 판단할 법적 기회가 생길 경우, 이미 확인된 책임 수용의 태도와 그 이후 실제 자료로 증명되는 변화가 있다면 함께 살펴 달라는 부탁입니다. 법률상의 판단과 인간적인 사정을 뒤섞지 않으면서도 둘 중 어느 하나를 잊지 않는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 가족의 어려움도 사실에 근거한 범위에서 살펴 주십시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본부장 가족의 중병과 관련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처벌은 그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를 의지하고 함께 살아온 가족에게도 큰 어려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의 구체적인 병명이나 치료 상황을 알지 못하며, 그에 관한 사생활을 추측하여 적는 일은 피하겠습니다. 있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 사정을 과장까지 하며 호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어려움이 잘못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가족의 사정과 피고인의 실제 돌봄 책임이 있는 경우 그것이 법의 범위 안에서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이 한 가정에 남기는 무게를 함께 생각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대목 역시 법령위반을 심리하는 상고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7. 제게 남아 있는 마음과 마지막 부탁

제가 이 탄원서를 올리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관용을 요구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공직에 있었던 한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법치주의의 문제이지만, 그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사람에 대한 이 두 생각을 떼어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되, 개인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 이상의 책임이 더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감형된 사실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제 기대와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합당한 법률상 상고이유가 있다면 신중히 심리해 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경우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본부장 자신의 행위와 반성, 기록으로 확인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서로 구별되어 온전히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엄정함이 필요한 때일수록 한 사람의 실제 책임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가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대법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원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는 한 시민의 탄원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간청드립니다. 이광우 전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면 기록과 법률에 따라 깊이 검토하여 주십시오. 다시 판단받을 법적 기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미 확인된 책임과 반성,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공정하게 헤아려 주십시오.

저는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락해 달라고 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정확한 판단과, 그 판단에 담긴 한 사람을 향한 신중함을 바랍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 소: _____

연 락 처: _____

대법원 해당 형사재판부 귀중